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. 6. 1 선고 2015가단261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3. 23.

판결 선고 2016. 6. 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62,28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9㎡'에 관하여 1976. 12. 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2,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

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안동시 C 임야 62,281m²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는 1972. 5. 30. 안동시 D 임야에서 분할되었다.

나. E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는 1972. 6. 5.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F의 처(妻)인 G는 1973. 10. 5.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3. 12. 5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F, G의 딸인 피고는 2014. 2. 7. G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H은 1972. 4. 2.경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9m²(이하 '이 사건 대지'라 한다) 및 이 사건 대지상의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을 매수하였다. 그 후 원고는 1976. 12. 1. I(원고의 남편인 J의 형이다)을 통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대금 50만원에 매수하였다. 따라서 원고는 H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, H은 F 또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,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F 또는 G의 상속인이므로 H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이에 원고는 H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1) 살피건대,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1976. 12. 1.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은 인정된다.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, 을 제2호증의 1, 2, 을 제3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I이 아닌 원고라 하더라도, 갑 제4호증의 1, 2, 갑 제5호증, 갑 제6, 7호증의 각

기재만으로는 원고(또는 I)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외에 이 사건 대지까지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가)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'건물'매도계약서임이 명시되어 있고,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에 이 사건 대지는 누락되어 있다.

나)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'매도인은 대지 30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협조한다'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(다른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필기구로 부기되어 있다), 이는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청구 등을 당할 경우 매도인인 H이 이 사건 대지의 사용권 확보 등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, 원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H이 그 이전등기를 하는데 협조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보기 어렵다.

다)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G 및 피고가 납부해 왔고,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G 또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.

2) 설령 원고의 H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, F이 1972. 6. 5.(원고가 주장하는 H의 이 사건 대지 매수일인 1972. 4. 2. 이후이다)이 사건 임야를 소외 회사에, 그 후 소외 회사는 G에게 각 매도하고,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이상, 피고가 F 또는 G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, 이 사건 임야를 특정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. 그러므로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.

3)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, H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인경

별지